

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,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, 개선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하오니 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3. 20.

(재)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1 사업개요

- 접수기간 : 2026. 3. 20.(금) ~ 2026. 4. 16.(목) 16시
- 지원대상 : 공고일기준 광주광역시 관내에 입지한 상시 5인이상 2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
 - ※ 대표자 제외,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
 - ※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사업체

< 지원 제외 대상 >

- 공고일 이후 휴·폐업 상태의 사업체
- 건물주,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
- 설치·보수하고자 하는 시설·설비가 노동자 휴식·편의와 무관한 경우
- 시설·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의 통상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설치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최근 3년이내 유사한 사업으로 시 또는 출자·출연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기업

○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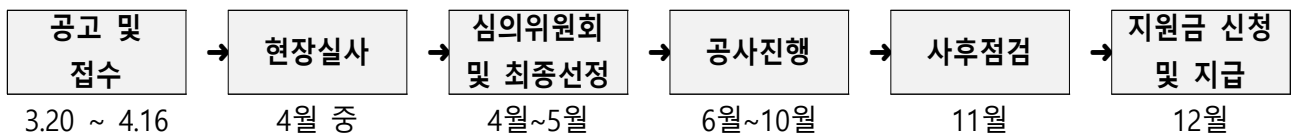
- 휴게실(샤워실 포함) 신설 및 개·보수 공사 비용 지원
※ 예시: 도배, 조명, 창호, 공간 분리 등
- 물품은 냉·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고정식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
※ 휴게시설 공간확보, 공사시행, 운영 등은 해당 사업체에서 추진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(휴게시설 설치·관리 기준), 별표 21-2를 준수하여 설치
- 휴게실은 남·여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하되, 필요시 단계적으로 설치가능 (신청계획에 반영)

○ 지원한도

- 1개 사업체 당 최대 700만원 내외 지원
※ 참여신청 사업체수와 사업예산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
- 1개 사업체 당 공사비의 최대 80% 지원
※ 사업체 부담 : 공사비의 20%이상(부가가치세를 뺀 공사비), 부가가치세

2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진행절차(예정) ※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

- 신청기간 : 2026. 3. 20.(금) ~ 4. 16.(목) 16시
- 선정통보 : 5월 중(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)
- 접수방법 : 광주기업지원시스템(www.gjbizinfo.or.kr) 신청
 - 모든 파일은 제출서류명(기업명)으로 업로드
 - 문 의 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 ☎062-230-2624
- 제출서류: 붙임1 참조

[현장점검]

- 사전현장조사 : 신청 사업체를 직접 방문,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
- 사후점검 : 신청계획서 대비 시공 완료 확인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, 별표 21확인)
 - 시공된 휴게시설 확인
 - 사업장 내 휴게시설 위치확인(화재 및 폭발 위험, 유해물질 취급 장소,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 여부)
 -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, 습도조절 기능, 조명 조절 기능 확인
 - 도면과 대조, 물품의 경우 신청계획서에 맞는 물품인지 확인

3 심사 및 평가

- 현장실사 : 신청 사업체를 직접 방문,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
 - ※ 신청 사업체 수가 10개 초과한 경우 서류심사를 거쳐 10개만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
 - 기간 : 4월 중(사전 협의 방문)
- 서류심사 : 적격여부 판단후 선정심사 위원회 평가
 - 서류 및 현장실사 결과 종합하여 최종 평가
- 결과발표 :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('26. 5월 중 예정)
 - ※ 평가기준 : 개선필요성 및 시급성, 노동자 수, 계획 타당성, 일정 적정성, 예산 타당성 등
 - 가점(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우수중소기업인대표기업)
 - 상세 붙임 참조
 - ※ 총점 60점미만 탈락

4 기타사항

- 자부담 비율 20% 미만 확보시 지원금을 환수합니다.
- 사업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사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선정기업이 교부결정의 내용에 맞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

지도.감독을 하며 위반시 서면 경고, 시정조치 요구, 교부결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- 신청서 등 각종 증빙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사업체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반드시 광주 관내 소재 시공업체로 견적서(공사원가계산서 포함)와 도면 작성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해야합니다.
- 신청서나 각종 증명(빙)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거나 부정당 행위 발생시 지원을 취소합니다.
- 지원내용으로 시설개선을 신청한 기업은 시설의 소유관계 및 잔여 임차기간에 따라 개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합니다.
- 휴게시설 설치 지출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시 지원 액수는 실비에 국한합니다.
- 접수 미달 시 재공고(2차 접수) 후 기존 접수(1차 접수) 업체와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 선정 이후 개별적으로 공사 착수에 대해 안내하므로, 선정 전에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.
- 공사비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.
- 사업완료 후 3년간 지원 시설을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환수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문의 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 ☎062-230-2624

붙임1

신청시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비고
1	사업신청서	서식1~6
2	지원사업 계획서	
3	사업계획 세부내역서	
4	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	
5	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	
6	기업(개인)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	
7	사업자등록증	
8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공고일 이후 발급분)	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9	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(공고일 이후 발급분)	홈택스, 정부24
10	견적서(원가계산서 포함) 및 비교견적	
11	설계도면 및 건축물대장	
12	건물주(임대자) 사업참여 동의서	임차중인 경우 / 서식 7
13	광주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우수중소기업인대표기업 인증서	해당기업 (가산점)

※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